#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59

발의연월일: 2024. 10. 17.

발 의 자:김태선·박 정·이훈기

장철민 · 김태년 · 윤종군

한민수 · 박홍배 · 정준호

김주영 • 이기헌 • 이용우

박균택 • 이학영 의원

(14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패스트 패션(SPA) 업체의 성장 등은 패션 산업의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폐의류의 급증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의류뿐 아니라,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의류 재고품 역시 상당량에 달하며,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 훼손을 우려해 이를 몰래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재고 의류의 소각은 제품생산에 투입된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새 옷을 바로 소각 처리하는 것은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의 측면 뿐 아니라, 의류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판매되지 않은 직물

및 신발 재고의 폐기를 금지하는 제도를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순환자원 경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사업자가 의류재고품을 폐기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의류 재고품을 순환자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류재고품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의류 기업이 재고 품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제4항 신설), 의류 를 제품등 순환이용 촉진 대상 품목에 추가하고자 합니다(안 제17조 개정).

#### 법률 제 호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자는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가 중단된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고품의 소각 등 폐기를 할 수 있다.

제17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을 "종이류, 유리용기류, 조강 또는 선철류, 의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③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④ 사업자는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가 중단된 재고품의 순환		
	이용 촉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		
	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재고품의 소각 등 폐기를		
	<u>할 수 있다.</u>		
<u>④</u> · <u>⑤</u> (생 략)	<u>⑤</u> ・ <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제17조(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제17조(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을	종이류, 유리용기류, 조강 또는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	선철류, 의류 등 대통령령으로		
품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u> 정하는 제품등</u>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